

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전문위원 장 용 대

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0년 11월 16일 유완백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국내 관광사업자 개념에서 국외 관광사업자를 일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하고
- 관광여건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에게 보조 및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
- 행정능률의 향상과 유연성을 갖춘 체계적인 관광 정책수립과 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제목의 변경

- 「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 조례」로 띄어쓰기 함

나. 용어 정의의 명확화(제2조)

- 국외여행사 정의 추가
- 관광사업자 정의 추가

다. 관광객유치 지원 범위 확대(제4조)

- 전세기 취항시 국외 여행사 추가
- 도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

라. 민간위탁 근거 마련

-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제8조 및 제9조)

마. 행정의 책임성과 자율성 확대

- 서식 삭제(별지 삭제)

바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- 조례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(이름)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, 약칭의 사용 등을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.
- 주어와 서술어, 부사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까지 호응이 잘 되도록 조례 문장을 재구성함.
- 그 밖에 일본식 표현(타, 당해 등), 어려운 용어의 정비 등

4. 검토의견

이번에 개정하는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주요내용으로는

- 관광객 유치 지원 범위 확대(제4조)를 하여 전세기 취항시 국외 여행사 추가하고, 도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판매
- 관광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근거 마련(제8조와 제9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기비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임.

이번 개정조례는 충청북도 관광 진흥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, 관련부서와 협의하였고, 입법예고는 제외하였음.

붙임 :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※ 참고자료

1. 우리도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

- 적용대상 : 여행업 등록을 필한 국내여행사
- 지원내용
 -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
 - 지원조건 : 10인 이상 유치, 도내 1일 이상 숙박, 2개소 이상 관광
 - 지원금액 : 1박 10천원, 2박 12천원, 3박 이상 15천원/1인기준
 - 전세기 취항 유치 인센티브
 - 지원조건 : 탑승객 70% 이상 도내 1일 이상 숙박, 2개소 이상 관광
 - 지원금액 : 편당 4,000천원
 - 전세기 취항 모객 광고비
 - 지원조건 : 3개월 이상 청주공항 이용 전세기 주 1회(편도)이상 운항하는 충북관광 상품 모객광고
 - 지원금액 : 상품당 10,000천원내에서 총광고비 50%지원
 - ※ 모객내용 : 도내 1일 이상 숙박, 2개 이상 관광(탑승객 70%이상)
 - 수학여행단체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
 - 지원조건 : 수학여행단체 100명 이상 유치, 1박 숙박·2개 이상 관광
 - 지원금액 : 4천원/1인기준

2. 우리도 보조 및 위탁사업

- 보조사업 : 4개 사업
 - 외래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
 - 국내·외 관광홍보 판촉활동 및 홍보관 운영
 - 국내·외 관광객유치 사전답사 및 관광설명회
 - 관광기념품 공모전
- 위탁사업 : 2개 사업
 - 충북 종합관광안내소 운영
 - ※ 충청북도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위탁
 -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

3. 타 시·도 사례

○ 관광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

- 국내 일반여행사 및 해외 여행사 : 7개 시·도 지원

시도명	지 원 대 상	지 원 내 용
서울시	·국내 일반여행사	- 서울 세계등(燈)축제』 연계 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: 모객실적 우수 업체 인센티브
부산시	·국내 일반여행사	-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· 10인이상 2박/ 10천원(수학여행 5천원) - 비정기 노선 해외항공 유치 인센티브 · 50이상 탑승, 1박/편당3백만원
대구시	·국내 일반여행사	-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· 10인이상, 1박/ 1인 1박(12천원), 1인 2박(27천원), 1인 3박(47천원)
대전시	·국내 일반여행사	-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· 10인이상 1박, 관광지 2개 이상/1인당 1박 10천원 - 외국학생 단체수학여행단 유치 ·100인 이상 / 3천원
광주시	· 국내 일반여행사, 외국 여행업체	-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· 5인이상/ 1인당 1박 10천원/,2박 15천원, 3박 20천원
울산시	· 국내 일반여행사, 외국 여행업체	-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지원 ·10인이상, 1박/1인 1박 10천원 - 상품광고비 · 1회당 1,000천원/1박이상 체류일정으로 각종축제 및 관광자원을 상품광고 - 버스임차료 ·1회당 10인 이상 내 · 외국인 단체관광객/ 1인 1박당 10천원
경기도	· 국내 일반여행사, 외국 여행업체	-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지원 · 6인 이상/1인 1박 5천원, 1인 2박 15천원, 1인 3박 25천원, 1인 4박이상 35천원 - 상품개발 홍보비 지원 ·일본 200,000¥, 중국 13,000元대만·홍콩·싱가폴·구미 대양주 USD 2,500\$ 이내

시도명	지 원 대 상	지 원 내 용
충남도	· 국내 일반여행사, · 외국 여행업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· 10인 이상 1박, 유료 관광지 1+자유관광지1/ 1인당 1박 10천원 - 외국학생 단체수학여행단 유치 · 100인 이상 / 3천원
강원도	·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“국내여행사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강원DMZ지역 관광객 유치여행사 · 1박 이상 유료 숙박/차량(버스)1대 20인 이상/ 1박 200천원, 2박 300천원
전남도	· 국내 일반여행사, · 외국 여행업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지원 · 10인 이상, 1박/1인 1박 10천원, 2박 20천원, 3박 이상 25천원 - 중국시장 특별지원 - 무안국제공항 인바우드 전세기 유치지원 · 탑승객 70%, 1박 이상 숙박/왕복 1회당 5,000천원 -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· 아웃바운드 전세기 임차지원/편당 3백만원
전북도	· 국내 일반여행사, · 외국 여행업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지원 · 6인 이상/1인 1박 5천원, 1인 2박 15천원, 1인 3박 25천원, 1인 4박 이상 35천원 - 상품개발 홍보비 지원 · 일본 200,000¥, 중국 13,000元대만·홍콩·싱가폴· 구미 대양주 USD 2,500\$ 이내
경남도	· 국내 일반여행사, · 외국 여행업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· 10인 이상 1박/ 1인당 1박 10천원, 2박 20 천원, 3박 이상 25천원 - 광고비 지원 · 1회당 1,000천원/1박 이상 체류일정으로 각종축제 및 관광자원을 상품광고
제주도	· 국내 일반여행사, · 외국 여행업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세기 운항 인센티브 · 3개월 이상 전세기 주 2회(편도) 이상 운항인 경우/ 편당 5백만원

○ 관광업무 위탁 현황

시도명	관광 업무 위탁 근거 규정	위탁 업무 내용
서울시	·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·서울관광마케팅(주)의 관광업무 포괄 위탁
부산시	·부산광역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설치 조례	·부산관광개발(주)의 관광업무 포괄 위탁
대구시	-	-
인천시	·인천역시 관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·인천관광공사의 관광업무 포괄 위탁
광주시	-	-
대전시	·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	·관광안내소 및 관광홍보관 관리·운영, 관광객 유치사업 등 7개 사업
울산시	-	-
경기도	·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	·경기관광공사의 관광업무 포괄 위탁
강원도	·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	·관광홍보·마케팅에 관한 사무
충남도	·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	·국내·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,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등 7개 사업
전북도	·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	·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,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등 7개 사업
전남도	·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	·종합관광안내소,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관광전 참가 등 8개 사업
경북도	-	-
경남도	·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	·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, 관광공예 명품관 운영 등 6개 사업
제주도	·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·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	·제주관광공사(국외) 및 제주관광협회(국내)의 관광업무 포괄 위탁